

6. 工業化住宅의 普及擴大 綜合對策

資料提供：建設部

I. 배 경

○ '90년 이후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건설기능인력의 부족난이 심화

(단위: 천명)

구 분	'89	'90	'91	'92
수 요	912	1,103	1,221	1,270
공 급	912	1,082	1,165	1,199
과 부 족	-	△ 21	△ 56	△ 71

○ 연도별 인건비 상승율

• 이에 따라 최근의 인건비 상승은 주택건축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

구 분	'85	'86	'87	'88	'89
총 공사비	100.0	100.5	102.4	114.7	129.6
인 건 비	100.0	104.9	112.2	151.9	184.6
재 료 비	100.0	98.1	98.1	98.9	103.6

* 자료: 대한건설협회

○ 향후 주택정책의 과제는 새로운 공법개발을 통한 공업화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재를 개발하여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.

II. 현 황

가. 보급실태

- '80년대 중반까지 조립식주택의 생산능력은 매우 미흡하고, 이에 의한 공급실적 또한 '89년까지 연간 10,000세대 이하 수준이었으나, '90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'90년 현재 완전조립식 주택건설비율이 전체 주택건설수의 3%로서 유럽의 25%, 일본의 13%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임.

〈年度別 組立式住宅 生産能力 및 建設實績〉

(단위: 천호)

연 도	'85	'86	'87	'88	'89	'90
연 간 생 산 능 력	10.7	18.7	18.7	21.7	21.7	34.8
조립식주택건설실적	2.7	5.1	2.9	5.1	8.6	23.2
연 간 주 택 건 설	227.4	288.3	244.3	316.6	462.0	750.0
(보 급 율)	(1.2%)	(1.8%)	(1.2%)	(1.6%)	(1.9%)	(3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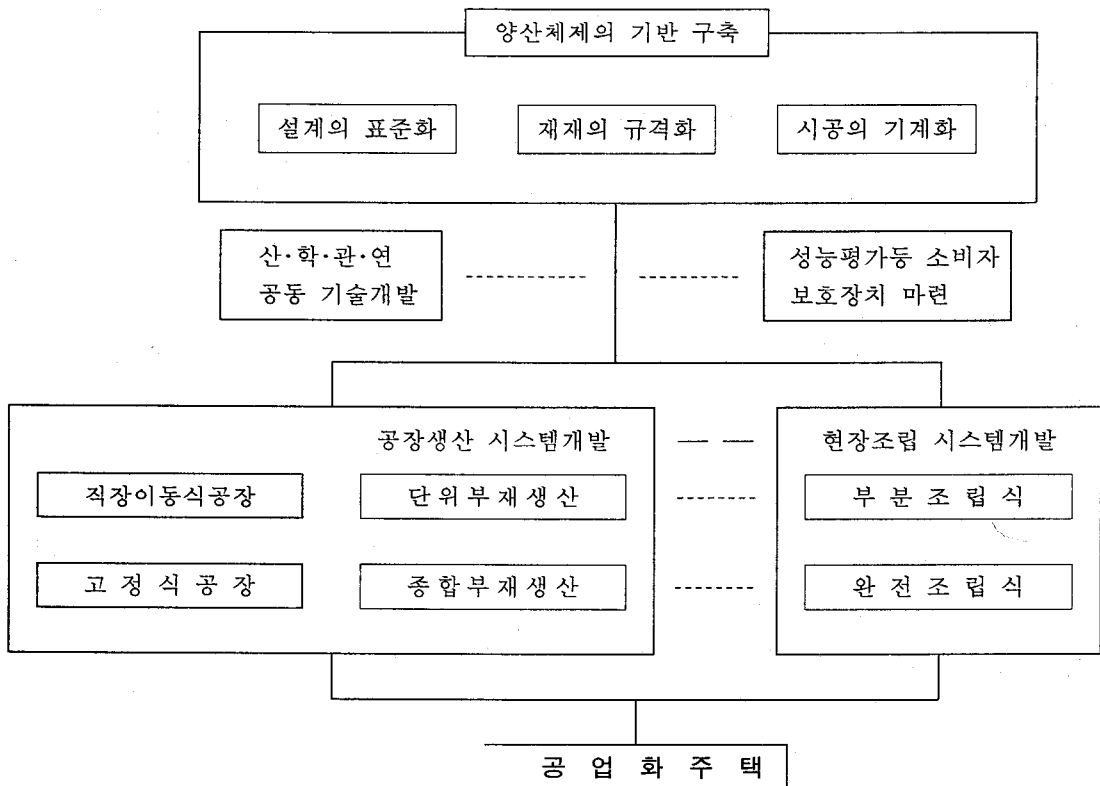
나. 조립식 주택의 특징

(15층 아파트 기준)

구분	장 점	단 점
공 사 기 간	○ 공정의 단순화로 공기단축 : 약 15~20% • 재리식: 15~16개월 • 조립식: 12~13개월	○ 고정식공장 생산방식의 경우 공장생산 준비기간 소요 (현장 이동식 공장을 이용한 생산방식의 경우는 제외)
경 제 성	○ 재래식보다 약 5% 절감(향후 인건비 상승시 절감폭 증대) ○ 기계화시공으로 인력절감 :약 15~30%	○ 초기 설비투자 과다 ○ 수송비 및 장비비는 재래식보다 다소 증가

구분	장 점	단 점
성 능	○ 부재성능 균일 등으로 품질보장 용이 ○ 단열효과 우수, 균열감소	○ 접합도 취약(구조안전 및 소음방지상)
설계	○ 표준화 용이	○ 다양화 곤란
시 공	○ 현장공정의 단축 및 공장제작으로 시 공관리 용이 ○ 천천후 시공 가능	○ 대형 중량물의 취급상 대형의 조립 및 수송장비 필요
기 타	○ 대량공급에 유리 ○ 부재단면의 폭과 두께가 작아지므로 내부공간 활용도의 증가	○ 수송거리 한계(공장반경 100km)에 의 한 공급지역의 제한(현장이동식 공장 의 경우는 제외)

다. 조립식주택 개념도



Ⅲ. 제약요인

가. 투자측면

○ 연간 3천세대(15평 기준)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투자비는 약 15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.

- 부지 구입비(2만평): 20억~40억원
- 공장 건설비(3천평): 35억원
- 장비 구입비 : 30억원
- 시설 및 설비투자비: 30억원
- 기술 도입비 : 10억~20억원

계: 125억~155억원

○ 연간 3천세대(15평 기준)씩 최소 5년~7년 이상 가동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됨(경제적 수송거리: 공장에서 100km 이내)

* 초기투자비와 생산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, 가동 2년후 최초 이익발생

나. 제도 측면

○ 조립식 공장설치에 대한 규제가 많음.

(국토이용관리법, 수도권정비계획법)

○ 금융등 지원제도가 미흡함.

○ 공업화건축을 위한 기반조성(설계 및 자재표준화)이 미흡함.

다. 시공자 및 발주자 측면

○ 시공자는 새로운 공법시도에 따른 위험부담 및 새로운 현장관리체제의 도입 등으로 재래공법 선호경향

○ 발주자는 공사발주 및 계약방식을 조립식공법 등 신공법으로 채택하는 경우 개관적평가의 곤란, 소요기간 과다 등으로 기피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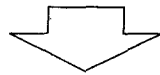
라. 수요자 측면

- '70년대 초기도입과정에서 결로현상 등 하자발생이 다수 있었으며, 다양한 설계개발이 곤란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결과, 입주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 조립식주택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가 낮음(소규모, 저렴주택)

IV. 추진방안

〈기 본 방 향〉

- 1)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민간에 수요제공
- 2) 민간부문에 대한 제약요인의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
- 3) 성능평가제도 보완 및 공사발주방식 개선을 위한 여건정비
- 4) 산·관·학·연의 연계에 의한 기술개발 등 기반확충
- 5)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



- 조립식주택의 보급전망: '93년까지 연간 건설호수의 20% 수준

(단위: 천호)

	'89	'90	'91	'92	'93 이후
연간생산능력	21.7	34.8	74.4	102.4	120.0 (추정)
조립식주택건설	8.5	23.2	50.0	75.0	100.0
연간주택건설 (보급율)	462 (2.2%)	750 (3.1%)	500 (10%)	500 (15%)	500 (20%)

※ 주공 및 지자체 건립 아파트이 30% 이상 보급

※ 임대아파트의 50% 이상 보급

1. 공장부지 확보지원

가. 수도권규제 완화

○ 자연보전권역, 개발유보권역내 허용규모 확대

구 분	현 행	변 경
자연보전	계획입지 공장면적 3천㎡, 부지면적 3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	조립식공장: 공장면적 3천㎡ 부지면적 6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
	자유입지 부지면적 3만㎡ 이내에서 신증 설 가능	부지면적 6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
개발유보	계획입지 공장면적 3천㎡, 부지면적 3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	조립식공장: 공장면적 3천㎡ 부지면적 6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
	자유입지 공장면적 1천㎡, 부지면적 2만㎡ 이내 신증설 가능	좌동

(증설시 기준공장면적 불포함)

(조립식공장 시설기준(연간 15평형 4천세대): 대지 6만㎡)

• 가급적 계획입지로 입주토록 유도

* 내부방침 변경시행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

○ 개발유도권역내 계획입지 미착공 500만평을 조기 착공토록 하여 P.C공장 우선 유치

* 행정지시

나.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완화

○ 경지지역·산림보전지역을 공업용지 지구로 용도지역변경 허용(기초치)

- 용도지역 변경의 조속처리(지원창구 설치운영: 건설부국토계획국)
- 시·도지사예 용도지역변경 위임범위 확대추진(10만㎡ ⇒ 15만㎡)
- 공업용지지구 지정요건인 농지 및 초지의 비율완화(50% ⇒ 상향조정)
 - *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지시

다. 수도권주변 공단내 입주허용

- 기존 공단내 원료공급지 및 수요지 병행검토후 허용
(송탄, 시화공단 등)
 - * 공단입주기준 작성시 반영

라. 공장입주기준 완화

- 콘크리트 조립구조재의 공장면적기준을 완화(10% 이상→5% 이상)
 - * 상공부고시(제87-14호) 개정

2. 금융 및 세제지원

가.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

- 공장건설 및 장비구입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융자

(단위: 억원)

계	'91	'92	'93
4,500	1,500	1,500	1,500

- 융자조건: 연리 12%, 2~3년거치 3~5년 상환
(자동화설비금융: 연리 12.4%, 3년거치 5년상환)
- 지원대상
 - 완전조립식 및 부분조립식 자재생산업체
(주축법상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업체 및 우량자재생산업체에 우선지원)
 - 생산능력 및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(증설 포함)

* 상기자금의 운용계획 변경시 반영

나. 조립식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우대

○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

* 행정지침

다. 세제지원

○ 조립식공장 설비투자를 자동화설비에 포함

• 설비투자의 15%를 세액공제

* 세액공제대상을 중소기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조립식주택 자체
생산업까지 확대

○ 조립식주택 기술개발 및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

• 기술개발 및 연구비의 10~15%를 소득세에서 공제

○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

•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설투자비의 10%를 소득공제

3.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의 확대

가. 공영개발택지 우선공급

○ 토개공, 주공, 지자체 등의 택지개발시 우선공급

* 행정지시 및 택지고급승인시 반영

나. 업체가 개발한 공법의 표본설계도서 인정·활용

○ 건축법상 표본설계도서로 인정

• 현재개발된 도서 13종(11~32평형)

11, 12, 14, 16, 17, 18, 21, 25, 27, 28, 31, 32
--

- * 행정지침

다. 허가, 검사, 절차의 간소화

- 건축허가시 제출서류의 일부면제(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)
- 중간검사의무 면제
 - 품질확보에 대하여는 성능평가제도를 도입운영
 - * 행정지시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

라. 기타

- 조립식주택 공법을 채택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건설지정업체자 1인 이상의 보증시 착공과 동시 분양허용(현행 2인 이상)
 - 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
- 신도시에 있어 조립식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시 용적을 인센티브 부여
 - * 신도시 도시설계에 반영

4. 공공부문에 대한 조립식공법 우선 채택

가.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립식공법 채택유도

- 대형공사(30억 이상) 입찰방법심의(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)시 TURN-KEY 및 대안입찰방식의 채택
 - '91 : 연간 발주량의 10~20% 수준
 - '92 이후 매년 생산능력에 따라 상향조정
- 턴키 및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발주기간 단축(240일 → 160일)
 - 기본설계에 의한 입찰과정 생략 등

※ 주공의 조립식주택 채택전망

(단위: 세대)

'91	'92	'93	'94 이후
7,000	10,000	16,000	매년 2만

*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상향조정 추진, 임대아파트에는 우선 채택

○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리식부재 생산공장의 생산능력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자율결정

* 주공 및 지자체 사업계획에 반영

나. 주공 및 건설업체 공동출자로 시범공장 건설추진(별도 검토)

다. 주공의 주택유형 설계도서를 축소(60종→15종)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주택은 주공의 표준설계로 건설토록 권장

○ 공공임대주택(7~13평형)에 대하여 주공의 설계사용시 국민주택기금 우선용자

* 행정지침

5. 분당신도시 조립식 시범단지 조성 추진(별도추진)

6. 조립식주택의 품질보장 및 성능평가 제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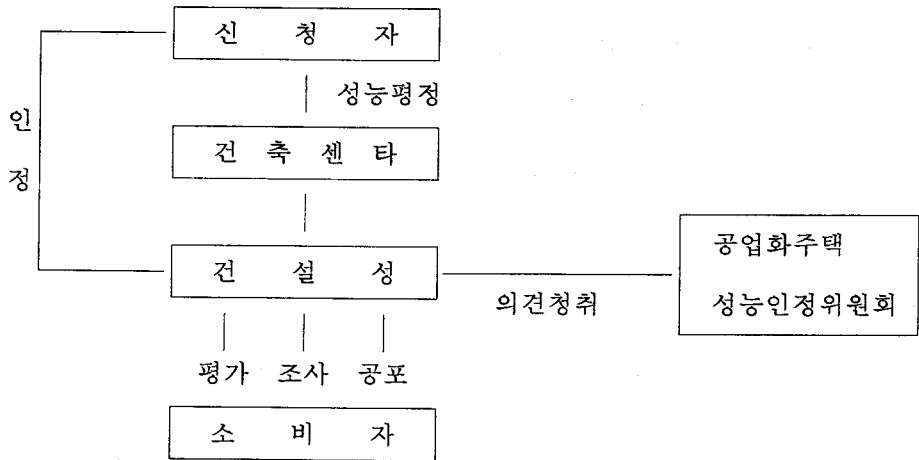
가. 성능확인기준과 절차보완

○ 기본요구 성능과 구조설계 및 시공기준 보완

• 성능요구 조건(예)

거주성	안전성	내구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열성 • 차음성 • 흡음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합부의 안전성 • 내진성 • 방화성 • 부재의 안전성(구조설계기준 마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습성 • 내후성 • 내수성 • 내열성 • 내마모성

- 시공기준 마련
 - 부재의 제작
 - 부재의 취급과 조립·접합
 - 검사 및 시험방법
 - * 전문기관의 용역실시
- 성능평가 및 확인절차 마련
 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완
-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
 - ※ 외국의 성능평가 및 인정절차(일본예)



나. 주택자재생산 등록이행 및 품질검사 철저이행

7.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 확대

가. 공업화주택 기술지원반 설치·운영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- 기 능
 - 품질보장 및 성능확인 업무

- 해외 공업화주택 기술도입시 검토·심의(과학기술처와 공동)
- 공업화주택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검토·자문
- 공업화주택 관련 정보수집·보급 및 기술지원
-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에 대한 조정

나.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

- 생산업체: 협의체 구성 공동기술개발
 - 매출액의 일정비율(0.1~0.5%) 공동투자 추진
 - *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조건사항임.
 - 주요과제: 접합부위 건식공법(Caulking) 개발
 - 전음방지기법 개발
 - 조립식부재 마감처리
 - 조립공법(Erection)등
- 공공기관: 주택공사, 건설기술연구원, 건축학회 등
 - 국민주택기금 및 국책과제로 추진
 - 주요과제: 부분 조립식공법 개발
 - P.C 내진설계 실험연구
 - 부품형 주택생산 SYSTEM 개발(국책연구 과제)
 - 주택기술정책 개발연구(국책연구 과제)

〈연구개발비 투자규모〉

(단위: 억원)

	'91	'92	'93
계	20	25	30
민간(업체투자)	18	22	25
공공(국민주택기금)	2	3	5

*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시 반영

다. 기술인력 양성 등

- 민간부문의 기능공·기술자 양성
 - 각 업체별로 기능공 단기양성과정 설치운영
 -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에 반영(건설기술교육원)
- 일선 인·허가 공무원 교육
 - 지방건설공무원 보수교육에 반영(건설공무원교육원)

라. 주요 주택부품의 표준화를 위한 척도조정 실시

- 척도조정 규격 분석(M.C)
- 설계기준 설정
- 부품 표준치수 설정
- 법규 및 제도조정(공공주택은 M.C설계의무화 검토)
 - *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

마. 건축자재의 K.S 규격 확대·보완

- 조립식주택 자재규격 수정보완(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등 6종)
- 척도조정 관련규격 보완(벽판부품의 표준모듈치수 등 10종)
- 신규 K.S 제정
 - * 공업표준심의회 상정

8. 조립식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홍보 실시

가. 전시회

- 주택자재 전시회 행사에 생산업체 공동참여 추진
- 분당 신도시 『주택공원』 활용

나. 국제심포지엄 개최

- 덴마크·불란서·일본의 관계전문가 초빙
(건축학회·건설기술연구원·주공)

V. 기대효과

가. 기능인력의 절감에 의한 인력난해소에 기여

(단위: 천호, 억원)

구 분	'92	'92	'93	계
생 산 능 력	75	100	120	-
건 설 예 상 호 수	50	75	100	225
인 력 절 감	20	30	40	90
• 순 수 인 력 절 감	5.6	8.4	11	25
• 단 순 노 동 인 력	14.4	21.6	29	65
활 용 에 의 한 절 감 (금 액)	800	1,200	1,600	3,600

* '93년 이후에는 연간 40천명씩 절감예상(연간 주택건설 소요인력의 10% 수준)

나. 공사기간의 단축과 공사비 절감

(사례) 주공 인천갈산지구 15층 1,170세대(7평형)

구 분	P.C	R.C	비율(%)
총 공 사 비	100.4만원/평	105.7만원/평	95
인 력 투 입	12.24인/평	14.4인/평	85
공 사 기 간	395일	465일	85
순 수 건 축 공 사	10.8인/평	14.4인/평	75

* 장비비 및 운반비는 증가: 6.2만원/평(공사비의 6% 해당)

다. 양질의 주택공급에 기여

라. 주택공급량의 증대

마. 건설자재의 수급안정에 기여

VI. 추진일정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 계 획	일 정	주관부서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1. 공장부지 확보 지원</div>				
가. 수도권규제 완화 ※ 부지에정지 위치: 수도권(자연보전권역): 52% 비수도권(경지·산림): 4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보전권역, 개방유보 권역내 허용규모 확대 • 개발유도권역내 계획입지 미착공 500만평을 조기 착공하여 P.C공장 우선 유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부 방침 변경 시행 •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	'91. 3 '91. 5 '91. 3~5	국토계획국 국토계획국
나. 국토이용관리법 상규제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지지역·산림보전지역을 공업용지지구로 용도지역변경 허용(기초치) - 공업용지지구 지정요건인 농지 및 초지의 비율 완화(50%→상향조정) - 용도지역 변경의 조속 처리(지원창구 설치·운영) - 시·도지사예 용도지역 변경 위임범위 확대추진(10만㎡⇒15만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 - 협의공문 발송 - 협의완료 - 조치 • 행정지시 •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	'91. 3 '90. 12. 27 '91. 3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 '91. 3 '91. 하반기	국토계획국 국토계획국 국토계획국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 계 획	일 정	주관부서
다. 수도권주변 공단 내 입주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공단내 개별검토후 입주허용 - 원료공급지 및 수요지 병행검토후 허용 (송탄, 시화공단 등) 		'91. 3 이후	상 공 부 국토계획국
라. 공장입지기준 고 시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콘크리트 조립구조재의 공장면적기준을 완화 - 10% 이상→5% 이상 * 상공부 고시: 제87-14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전문기 관에 용역 실시후 결 정 	'91. 10	상 공 부
2. 금융 및 세제지원				
가.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장건설 및 장비구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91국민주택 기금운용계 획 변경시 반영 	'91. 3	주 택 국
나. 조립식주택 건설 에 대한 융자 우 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 택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91국민주택 기금운용계 획 변경시 반영 	'91. 3	주 택 국
다. 세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립식공장 설비투자를 자동화설비에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세감면세 제법시행령 에 규정 	'91. 3 이후	재 무 부
3.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				
가. 공영개발택지 우 선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의 공영개발 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택지공급대 상자 추천 시 우대실 시 	'91. 3 이후	주 택 국 (주택사업 협회)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 계 획	일 정	주관부서
나. 업체가 개발한 공법의 표준설계도서 인정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개공, 주공의 택지개발 시 우선 공급 • 표준설계도서로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택지공급 승인시 반영 	"	주 택 국 (토 개 공, 주 공)
다. 허가, 검사, 절차의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허가시 제출도서의 간소화 -상세도,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제출면제 • 중간검사의무 면제 ※ 품질확보에 대하여는 성능인정제도를 도입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단계: 행정지시 • 2단계: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 " 	'91. 3 '92.12-'91.6	
라. 기타 ○ 조립식주택 공법채택시 조기 분양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건설지정업자 1인 이상의 보증시 착공과 동시 분양허용 ※ 현행 2인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-안작성 -입법예고 -법제처심의 	'91. 3 '91.2~3 '91.4.15 '91.5.15	주 택 국
○ 조립식주택채택시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(신도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승인시 조립식공법에 대하여는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설계 내용에 반영 	'91. 3	신도시건설 계획실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 계 획	일 정	주관부서								
<p>4. 공공부문에 대한 조립식 공법 우선 채택</p>												
<p>가.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립식 공법 채택유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시 TURN-KEY 권장 및 대안입찰 지정 ※ 대상공사: 30억 이상 • 발주기간 단축(240일→160일) -기본설계에 의한 입찰과정 생략 등 ※ 주공의 조립식주택 채택전망 (단위: 세대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3 1012 738 1190"> <tr> <td>'91</td> <td>7,000</td> </tr> <tr> <td>'92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'93</td> <td>16,000</td> </tr> <tr> <td>'94이후</td> <td>매년 2만</td> </tr> </table>	'91	7,000	'92	10,000	'93	16,000	'94이후	매년 2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찰지침서 심의시 반영 • 관계부처 및 시·도에 협조공문 발송 	<p>'91. 3 이후</p> <p>'91. 3</p> <p>'91. 3</p>	<p>기술관리관실</p> <p>주택국 (주택공사)</p>
'91	7,000											
'92	10,000											
'93	16,000											
'94이후	매년 2만											
<p>나. 주공 및 건설업체 공동출자로 시범 공장 건설검토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검토 		<p>주택공사 주택국</p>								
<p>다. 주공의 주택유형 설계도서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주택은 주공의 표준설계로 건설토록 장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임대주택(7~13평형)에 대하여 주공의 설계사용시 국민주택기금 우선용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지침시달 	<p>'91. 3</p>	<p>주택국 (주택공사)</p>								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 계 획	일 정	주관부서
5. 조립식 시범단지 조성 추진	• 분당 신도시	• 별도추진		신도시건설 기 획 실
6. 조립식주택의 품질보증 및 성능평가제도 추진				
가. 성능확인 기준과 절차 보완	• 기본요구 성능과 구조설계 및 시공기준 보완 • 성능평가 및 확인절차 마련	• 전문기관에 용역 - '91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 수립시 반영(예산 1억)	'91. 3~8 ('91.2)	주 택 국 주 택 국
	• 성능확인기관 지정 및 평가	-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(우 선 행정지시로 시행 예정)	'91. 8~12 연차적 추 진	주 택 국
나.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이행 및 품질검사 철저이행	-	• 시·도에 공문지시 ※ 건설시험소 기술지도	'91. 3	시 · 도 (주 택 국)
7.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 확대				
가. “공업화주택 기술지원반” 설치·	• 공업화주택 관련정보수집, 공업화주택 다변화	-	'91. 3 이후	주 택 국 (건설기술

항 목	세 부 내 용	조 치-계 획	일 정	주관부서
라. 주요주택부품의 표준화를 위한 척도조정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건설공무원보수교육에 반영 척도조정규격분석(M.C) 설계기준 설정 부품 표준치수 설정 법규 및 제정정비 (공공주택은 M.C 설계 의무화 검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	'91.3~12	건설공무원 교육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립식주택자재 규격 수 정보완(6종) 척도조정관련 규격보완 (10종) 신규 K.S 제정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료수집·시안작성 공업표준심의회 심의 자료수집·시안작성 공업표준심의회 심의 공업표준심의회 상정 	'91.2-8 '91.10
마. 건축자재의 KS 규격 확대·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립식주택자재 규격 수 정보완(6종) 척도조정관련 규격보완 (10종) 신규 K.S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료수집·시안작성 공업표준심의회 심의 공업표준심의회 상정 	'92.1~8 '92.10	공업진흥청 "
8. 조립식주택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홍보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시회 개최 - 주택자재 전시회 행사에 생산업체 공동참여 예) 경향하우징페어 국제심포지움 개최 - 덴마크·불란서·일본의 관계전문가 초청 (건축학회·건설기술연구원·주공 공동주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업표준심의회 상정 	'91.3 '91.4~5	주택국 도시국

〈별첨 1〉

추진경위

1. 특별대책반 1차회의 개최(12. 6)

○ 참석범위

반 장 : 제1차관보

간 사 : 건축기획관

반 원 : 건 설 부 : 수도권계획과장

토지이용계획과장

신도시건축담당관

주택기금과장

주택개발과장

건설경제과장

관 련 부 처 : 경제기획원(지역투자계획과장)

재무부(조세정책과장)

상공부(지방공업과장)

공업진흥청(재료표준과장)

경기도 도시국장

공 사 등 : 주택공사 기술본부장,

연구소장

서울시 도시개발공사

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장

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

주택사업협회 진흥국장

건축사협회 사무처장

대한건설협회

업 계 : (주) 한 성
삼환까류
(주)한 양
코오롱건설(주)
세경건설

학 계 : 신현식(중앙대)
이문섭(인하대)
홍성목(서울대)

2. 조립식주택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(2차: 12. 15/12. 18)

○ 참석업체: 18개 업체

3. 제2차 회담 개최(1990. 12. 21.(금) 14:00)

○ 참석범위(1차 참석자중 업계 제외)

4. 제3차 회의 개최(1991. 1. 9.(수) 14:00)

○ 참석범위(1차 참석자중 업계제외)

〈별첨 2〉

생산업체별 현황

(15평 기준)

조립 정도	업 체 명	'90 생산능력 (단위:세대)	공급가능 지 역	생산공법	도입국	도입 시기	신설 또는 증설계획	
							'91	'92
완 전 조 립 식	한 성	5,000	경기, 충청	한성 Tilt-Up	일 본	'71	4,000	—
	삼 환 까 무	5,600	전주김천이북	까 무 공 법	프 랑 스	'78	7,000	—
	강 남 건 영	5,000	대전 이북	강 남 P.C	자 체 개 발	—	—	—
	동 서 산 업	7,200	전 지 역	동 서 P.C	”	—	2,000	—
	한 양	12,000	”	한양 LVI	텐 마 크	'88	19,050	—
	삼 성 건 설	—	중 부 권	—	—	—	2,500	5,000
	유 원 건 설	—	남 부 권	—	—	—	3,000	—
	대 우	—	중 부 권	—	—	—	2,000	—
	한 신 공 영	—	”	—	—	—	—	2,000
	동 아 건 설	—	”	—	—	—	—	8,000
	우 성 건 설	—	”	—	—	—	—	6,000
	광 주 고 속	—	중부남부권	LN	—	—	—	4,000
	동 부 건 설	—	”	—	—	—	—	3,000
	롯데 건 설	—	중 부 권	—	—	—	—	생산능력 미정
	선 경 건 설	—	”	—	—	—	—	4,000
부 분 조 립 식	삼익세라믹	20,000	전 지 역	외벽커튼월	일 본	'84	100,000	—
	신라 교역	13,000	”	ALC 공 법	자 체 개 발	—	—	—
	세 경 산 업	3,000	”	S-K-PANEL	”	—	10,000	—
	우 림	12,000	”	—	”	—	—	—